

강화군 복지재단 규정(공포)

공포번호 제18호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사무위임 규정

2. 개정이유

- 강화군으로부터 자원봉사센터 관리·운영을 수탁받아 위탁업무의 일부를 자원봉사센터에 위임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규정을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제3조(위임사항)의 “별표” 개정
 - “강화군 행복센터장에게 위임하는 사항” → “수탁시설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”
 - 일반업무의 “키즈 카페 운영” → “소관 업무 운영”
 - 근거 규정 “「강화군 행복센터 운영·관리 위·수탁 협약서」 제3조제2항” → “위·수탁 협약서”

제22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 복지재단 사무 위임 규정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1월 23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한 석 현

